

##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검토보고서

###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방법과 수수료징수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

### 2. 주요골자

- 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을 규정함.(안 제2조제2호)
- 나.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 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함.(안 제11조)
- 바.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함.(안 제13조)
-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징수절차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14조)

### 3.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중 많은 양을 차지하고있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하고 자원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수집·운반·재활용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

으로 조례제정에 타당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되나 다만 조례안 제11조제3항에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 금액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있지 않은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 되어있고 또한 생활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가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것으로 볼때 이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참고로하여 수수료를 얼마로 정할 것 인지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한 것으로 사료가됨